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23707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 민법 제105조, 제681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237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4. 20 선고 2003나7870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A 담당변호사 안BA외 1인)

【피고, 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4. 20. 선고 2003나78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피고의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원고가 수탁업무처리시 준수하여야 할 보증심사기준 등에 따르면, 운전자금차입금의 대출한도는 신청건을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300% 이내이고, 개인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는 보증심사일이 5월 말 이전인 경우는 전기(전전년도)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5월 말 이후이거나 5월 말 이전이라도 '당기(전년도) 결산을 완료한 기업'은 당기(전년도)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재무상태를 심사하며, 신용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에는 피고가 보증한도 초과금액 및 그 종속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1. 3. 26. 대교주유소를 경영하던 조DA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기 위해 그 담보로 피고의 수탁기관으로서 조DA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6,4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조DA이 제출한 대교주유소의 당기 추정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대교주유소의 자기자본금을 168,934,931원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그의 300%인 5억 400만 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조DA의 기존 운전자금차입금 1억 2,100만 원과 이 사건 운전자금차입금 8,000만 원을 합하더라도 2억 100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신용보증심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CA기금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증심사기준에서 말하는 '당기 결산을 완료한 기업'이란 당해 기업이 객관적이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확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가 조DA에 대한 신용보증심사를 하던 당시는 2001. 3.경으로 5월 말 이전이고 당기 결산을 '완료'한 재무제표가 아닌, 당기 '추정'재무제표만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보증심사기준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에 의거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당기 추정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신용보증심사를 하였으므로 보증심사기준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서, 그러나 한편으로 ① 조DA의 대교주유소는 1998. 8. 설립 이후 꾸준히 매출액이 신장되어 온 업체로 신용보증신청일 현재 총 차입금이 1억 2,100만 원, 적립식 수신액이 500만 원으로 거래상태가 양호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체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무렵 대교주유소의 신용상태조사 결과 신용불량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② 원고는 신용보증심사시 위와 같은 대교주유소의 경영상태, 사업현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의 위탁보증심사요령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조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후 확정된 대교주유소의 당기 재무제표의 자본금은 90,177,365원인데, 이에 의해 조DA의 이 사건 신용보증심사 당시의 운전자금차입금 한도를 계산해 보면 그 한도액이 위 자본금의 300%인 270,532,095원으로 되어 조DA의 이 사건 운전자금차입금과 기존 차입금의 합계액인 2억 1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보증심사기준에 부합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비록 보증심사기준을 위배하였다 할지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용보증심사시 제출된 ‘당기 추정재무제표’는 ‘당기 결산을 완료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근거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심사를 한 것은 피고의 보증심사기준을 위배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나아가 원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보증심사기준은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신용보증을 방지하고 수탁업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탁자인 원고의 신용보증 업무상의 혼란을 막고 피고의 면책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보증심사기준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황을 심사하도록 한 것은 운전자금차입금의 대출한도가 자기자본금의 300% 이내이어서 자기자본금이 대출한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진실성이 담보되는 자료를 통해 자기자본금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들 중 ③의 사유는 사후에 확인된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신용보증심사 당시의 대출한도심사에 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①, ②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적정한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조DA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한 신용보증심사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증심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것은 면책기준의 해석 및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